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4. 1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3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7. 4. 6)

상정, 심사, 보류

제127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7. 4. 10)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정 상 택

가. 제안이유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보다 효율적 인사
운용을 통한 구정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함.

나. 주요 골자

(1) 실질적인 국장 책임경영제 기반 마련을 위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임용권 중 일부를 구본청의 보조기관인 소관 국장에게
위임 (안 제1조 및 제5조)

○ 위임사무명 : 7급 이하 직원의 국(局)내 전보권

○ 수임기관 : 구 본청의 소관 국장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안 제1조 및 제5조)

○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제9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구 본청의 소관 국장·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안 제5조관련 별표 “위임사무”에서 주관국이 행정관리국의 소관사무 중 7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관 국내 전보권을 소관국장, 보건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였고, 구의회내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휴직 및 복직과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보건소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도 보건소장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각각 위임하였음.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소관 국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각호를 신설하여 “소관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제9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구 본청 소관국장과 보건소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구 본청 소관국장 책임경영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

하고 구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임된 사무의 성과와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평하고 정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7. 4. 10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구청장의 권한사무 중 구소속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구 본청 소관국장에게 위임하여 구본청 소관국장 책임경영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항만을 위임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개정안 내용중 구청장의 위임사무의 범위중 구본청 보조기관을 제외하도록 수정.(안 제5조제1항)

나. 별표 “위임사무”의 행정관리국(총무과)란중 사무명 및 수임 기관 일부를 조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현행과 같이 하되, 다만 본문내용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안 제5조를 현행과 같이 한다.

별표 “위임사무” 중 행정관리국(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보건소장
	나.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복직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구 의 회 사무국장
	다.구의회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라.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안 부칙중 제1항의 항명과 항제목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u>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u> 한다. 제5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u>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u>	제 1 조 (목 적)-----「<u>지 방 자 치 법</u>」----- -----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보조기관의 장·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u>구 본청의 보조기관의 장·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u>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제38호·제5조제2항제41호·제6조제2항제33호·제7조제2항제43호 및 제8조제2항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5조(위임사무) ①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포함) · 의원면직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7조, 제30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6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동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구 의 회 사무국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u>소관 국내 전보 및 소내 전보</u> 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복직 다. 구의회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u>소관국장</u>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1.(개정안과 같음) 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u>소내 전보</u> 나.(개정안과 같음) 다.(개정안과 같음) 라.(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u>보건소장</u>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보다 효율적 인사운용을 통한
구정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국장 책임경영제 기반 마련을 위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임용권 중 일부를 구본청의 보조기관인 소관 국장에게 위임 (안 제1조
및 제5조)

○ 위임사무명 : 7급 이하 직원의 국(局)내 전보권

○ 수임기관 : 구 본청의 소관 국장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 임용권 일
부를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안 제1조 및 제5조)

○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3. 개정근거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제83조 제2항

(2)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 5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생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03.29)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보조기관의 장·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를 “구 본청의 보조기관의 장·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로 한다.

제5조관련 [별표] “위임사무”의 행정관리국(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관 국내 전보 및 소내 전보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소관국장 보건소장
	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복직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구 의 회 사무국장
	다. 구의회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제4조 제2항제38호·제5조제2항제41호·제6조제2항제33호·제7조제2항제43호 및 제8조제2항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u>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u>	제명: <u>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u>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u>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지방자치법</u> 」----- ----- -----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u> (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u>보조기관</u> 의 <u>장 · 구의회사무국장 ·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u>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u>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u>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생략)	제5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u>구 본청의 보조기관</u> 의 <u>장 · 구의회사무국장 ·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u>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위 임 사 무 (제5조 관련 별표)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포함) · 의원면직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7조, 제30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6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구 의 회 사무국장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관 국내 전보 및 소내 전보 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복직 다. 구의회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소관국장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